

〈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작성방법〉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[1]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교육 훈련	(1)	(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 점검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안전계획서 작성함 •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• 안전계획서를 매년 수정, 보완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m² 이상 노유자시설 • 「소방시설법」 제20조6항 및 시행령 제24조,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37쪽 참고
	(2)	(소방안전 관리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임명 • 정·부 안전 관리자 임명 *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신고서류 확인 • 시설 내에 안전 관리자 성명 등 게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m² 이상 노유자시설 •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선임 기준 : 1명 • 「소방시설법」 제20조 및 시행령 제22조의2, 제23조 참고
	(3)	(생활시설 연2회, 이용시설 연1회 안전교육 실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활시설 연2회, 이용시설 연1회 안전교육 실시 • 수시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• 실전 훈련 실시 • 소방훈련·교육실시결과기록부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m² 이상 노유자시설 • 중 상시 근무·거주인 10명 초과 시설 • 「소방시설법」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참고
	(4)	(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포함 개별 시설 안전관리매뉴얼을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포함 개별 시설 안전관리매뉴얼을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22-23, 29-30쪽 참고하여 개별 시설에 맞는 매뉴얼 작성
[2] 책임 보험 가입 여부	(1)	(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험증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체에 가입되어 있음 •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과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모두 충족함 	
	(2)	(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상책임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) 사망 시 1인당 5천만 원 이상 보상한도 설정 시 양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 및 시행령 제18조의3 참고 •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 참고 • 「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」 109~110쪽 참고
	(3)	(보험증권(M.원가입증서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한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지도 	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[3] 소방 안전 관리	(1)	(소화기 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바닥면적 33m² 이상 각 실별로 소화기 설치 • 각층마다 소형소화기는 20m 간격으로, 대형소화기는 30m 간격으로 설치 • 주방이나 보일러실에는 바닥면적 25m²마다 소화기 비치하고, 별도로 자동화산소화기 설치 (스프링클러설비·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으로 대체 가능) • 주방화재용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• 소화기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」 참고
	(2)	(소화기 압력지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화기 압력지침이 녹색에 위치하고 있음 • 머리 쪽으로 들어 흔들면 밀가루 흐르는 소리가 날 • 내용연수 10년 초과 소화기 교체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제15조의4 참고
	(3)	(자동화재 탐지설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• 전원 표시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음 • 시각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화재 탐지설비 :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m² 이상 노유자시설 • 시각경보기 : 노유자시설 •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제15조의6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[4] 생활 시설 및 해재 위험 예방	(1)	(자동화재 속보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• 전원표시등에 불이 켜져 있음 • 소방서와 바로 연결되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제15조의6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2)	(간이스프링클러설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• 스프링클러 헤드가 모두 잘 보이며, 살수 반경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활시설 및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 600m² 미만인 노유자시설(단,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면제) •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제15조의6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
분야	항목	내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③ 소방 안전 관리	(4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옥내소화전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◆ 소화전 함 내 호스 및 관창이 들어 있음 ◆ 구경 40mm 이상의 것으로서 시설물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의 호스를 갖추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연면적 1,500m²이상 또는 지하층·무창층·4층 이상인 총 중 바닥면적 300m²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전층에 설치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5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화전 주변에 장애물이 없음 ◆ 소화전 설치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,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음 ◆ 해당 시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내일 것 	
	(6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스프링클러헤드 중심으로 바닥면을 향하여 반경 60cm 이상의 공간 확보되어 있음 ◆ 실내장식 공사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려진 부분이 없음 ◆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의 천장에 누수 혼적이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바닥면적 합계가 600m²이상인 노유자시설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7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수조의 옆면에 수위계가 있는 경우 수위계 전체 길이의 4/5 이상 유지 ◆ 수조의 맨홀 뚜껑을 열어 관찰하였을 때 물의 수위가 오버플로우관(overflow) 유입구 최소 높이까지 유지 ◆ 옥내소화전 1개당 130리터*20분 소방용수 필요 ◆ 옥외소화전은 350리터*20분 소방용수 필요 ◆ 스프링클러는 80리터*20분 소방용수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방청 고시 「옥내소화전설비·옥외소화전설비·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◆ 옥내소화전 경우 최대 5개로 계산하여 $2.6 \times 5 = 13m^3$ 수량 확보해야 함 ◆ 옥외소화전 경우 최대 2개로 계산하여 $7 \times 2 = 14m^3$ 수량 확보해야 함
	(8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음 (주차차량 및 기타 시설물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미흡) ◆ 소화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	
	(9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자동화재탐지설비 전면의 모든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음 ◆ 교류전원과 정상전원(직류 24볼트)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음 ◆ 화재 표시등에 불이 꺼져 있음 	

분야	항목	내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③ 소방 안전 관리	(10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 받음 ◆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상황 소방서로 통지함 ◆ 녹음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여부 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방청 고시 「자동화재속보 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1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충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안내지도 부착 ◆ 피난방법과 설명이 부착됨 ◆ 피난도우미가 지정되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m² 이상 노유자시설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규칙 제4조의5 및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39-44쪽 참고
	(1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유도등은 상시 점등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◆ 유도등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식별이 쉬운 상태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1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비상조명등 위치표지가 부착된 곳에 비상조명등 비치 ◆ 비상조명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바닥 면적이 450m²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14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피난층과 11층 이상 제외 모든 층에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◆ 신체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성 있는 피난기구 설치 ex)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서는 승강식피난기가 적용성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」,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45-50쪽 참고
	(15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설치된 피난기구 고정 장치에 힘을 가하였을 때 움직임이 없음 ◆ 설치위치 표시 및 사용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방청 고시 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(16)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의무 시설*의 경우,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음 ◆ 비상구 문이 잠겨있지 않음 ◆ 대피로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「건축법」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의무 시설 : 3층 이상 층이고,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200m²이상인 아동 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거주시설 ◆ 「소방시설법」 제10조 참고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[3] 소방 안전 관리	(17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」 시행령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서 규정에 맞게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있음 방화셔터(방화문)이 화재감지기 작동에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임 방화셔터 작동 개소주변에 적재물이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」 시행령 제46조 참고 대상 :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방화구획,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, 외부 파난 가능한 연결 복도 중 하나 설치
	(18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연설비를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이상인 총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의 5호 기록 및 소방청 고시 「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19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연설비를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층 이상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 시설은 충수와 무관하게 배연 설비 설치의무 ('15.9.22 이후) 「건축법」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「건축물의 설비기준」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참고
	(20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 내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(블라인드 포함), 카펫, 종이벽지 등의 벽지, 전시용 학판 또는 섬유판 등이 방염처리가 되어 있음 침구류, 소파, 의자의 경우 방염처리 권고할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소방시설법」 제12조 및 시행령 제19조, 제20조 참고
	(2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 단열 시공법을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으로 했을 경우 단열재,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로 사용 외단열 공법이 아닌 내단열 시공의 경우 해당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물관리법」 시행령 제19조 (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) 참고
	(2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래와 같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였음 내부 마감재가 노후화 되있지 않음 	

분야	항목	내 용						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						
[4] 전기 안전 관리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불연 재료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섬유강화 시멘트판 유리섬유 혼입 시멘트판 섬유 혼입 규산 칼슘판 석고보드(두께 12mm 이상) </td> </tr> <tr> <td>준불 연재료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석고보드(두께 9mm 이상) 목판 시멘트판 경질 목판 시멘트판 목판 시멘트판 </td> </tr> <tr> <td>난연 재료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난연 핵판(두께 5.5mm 이상) 석고보드(두께 7mm 이상) </td> </tr> </table>	불연 재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섬유강화 시멘트판 유리섬유 혼입 시멘트판 섬유 혼입 규산 칼슘판 석고보드(두께 12mm 이상) 	준불 연재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석고보드(두께 9mm 이상) 목판 시멘트판 경질 목판 시멘트판 목판 시멘트판 	난연 재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난연 핵판(두께 5.5mm 이상) 석고보드(두께 7mm 이상) 	
불연 재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섬유강화 시멘트판 유리섬유 혼입 시멘트판 섬유 혼입 규산 칼슘판 석고보드(두께 12mm 이상) 									
준불 연재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석고보드(두께 9mm 이상) 목판 시멘트판 경질 목판 시멘트판 목판 시멘트판 									
난연 재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난연 핵판(두께 5.5mm 이상) 석고보드(두께 7mm 이상) 									
(2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로티 구조로 건물 1층 전부 또는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필로티 구조일 경우 건축물 연면적 1,000m² 미만 여부 표시 								
(24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문이 잠겨 있음 								
[5] 가스 안전 관리	(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누전차단기가 사건과 같이 설치되어 있고, 600V 이하 분배전반에 설치되어 있음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시험 버튼을 눌렀을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함 							
	(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냉난방 설비의 플러그는 전용콘센트에 삽입되어 있어야 함 멀티탭 정격전류에 맞게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음 노출전선 중 전선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124~125쪽 참고 						
	(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 정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 및 시행규칙 별표11 등 참고 						
	(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가스누출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며, 정상 작동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액화석유가스법」 시행 규칙 별표20 및 「도시가스 사업법」 시행규칙 별표7 참고 						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[6] 화재 재난 대응 대책 (9)	(2)		◆ 가스배관에 손상이 없으며, 정기적으로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고 있음	
	(3)		◆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에 끊긴 부분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	
	(4)		◆ 저장용기와 화기취급 장소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, 용기 보관 장소에 환기가 잘 이루어짐	◆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150쪽 참고
	(5)		◆ 정기·수시 안전점검을 받고 있음	◆ 「액화석유가스법」 제44조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7조 등 참고
	(1)		◆ 재난발생 정보 수집절차가 계획되어 있음 ◆ 항상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 ◆ 재난방송 청취와 전파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음	◆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257쪽 참고
	(2)		◆ 관련 소방서 및 지자체와 재난극복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◆ 관할 협력기관과 수시로 연락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	◆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58-63쪽 참고
	(3)		◆ 마대, 가마니, 삽, 리어카, 우비, 장화, 웬던 등을 준비하고 있음 ◆ 수방자재 창고에 자재 보관 상태를 기록하고 있음	◆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208-219쪽 참고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[7] 재난 대응 대책 (9)	(4)		◆ 비상 ◆ 의약품 및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있으며, 재난용품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	◆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212쪽 참고
	(5)		◆ 옥상 등에 강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품을 두지 않음 ◆ 집중 호우 시를 대비하여 긴급 배수펌프나 물막이 자재를 준비하고 있음	◆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209-210쪽 참고
	(6)		◆ 지붕에 피뢰설비가 되어 있음 ◆ 배전반이나 변압기에 접지가 되어 있음	◆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20조 참고
	(7)		◆ 냉방기기(에어컨 등)를 확보하고 있음 ◆ 냉방기기 관리자가 지정되어 제대로 관리되고 있음 ◆ 실외기 청소상태가 양호함	
[8] 생활 환경 보건 안전 (9)	(1)		◆ 건축물이나 건물 주변에 지반 침하가 없거나 바닥 포장 상태가 양호함 ◆ 하중에 의한 천장 치침 및 벽면 기울임 현상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음 ◆ 수분 유입에 의한 누수흔적 및 백태가 발생하지 않음	◆ 「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매뉴얼」 참고 ◆ www.sfms.or.kr(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) 홈페이지 '자료실'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음
	(2)		◆ 철근 부식 및 노출 등이 발생하지 않음 ◆ 콘크리트 벗겨짐 또는 떨어짐 현상이 없음(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.0mm 이상, 박락 깊이가 20mm 이상인 경우 위험)	

분야	항목	내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[8] 급식 위생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호가 가울어진 부분이 없고, 단열기능이 있음 	
	(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, 옥상배수관 막힘 부분 없음 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, 배수구 막힘 부분 없음 	
	(4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담장에 균열 및 침하 발생하지 않음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전도(위치 변경이나 뒤집어짐)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음 	
	(5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물 준공 시 내진 설계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공공시설물(건축물)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 라인 참고(행정안전부, '20.7)
	(6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물이 내진 설계 적용이 안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'예' 체크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경우이거나,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공공시설물(건축물)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 라인 참고(행정안전부, '20.7)
	(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음식조리 시 위생관련 복장을 모두 갖추고 일함 작업 장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166쪽 참고
	(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함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및 식품을 제공하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식품위생법」 제4조 및 시행규칙 별표24 참고

분야	항목	내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[9] 감염병 관리 대책				
	(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료별 저장조건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음 음식물 저장용기의 관리상태가 양호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식품위생법」 제3조 및 시행규칙 별표25 참고
	(4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생을 해치는 벌레 등의 혼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구를 사용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식품위생법」 시행규칙 별표25 참고
	(5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칼이나 도마 등 조리기구를 살균·소독제·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하여 사용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식품위생법」 시행규칙 별표24 및 별표25 참고
	(6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리장 내 구비되어 있는 수세시설과 소독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식품위생법」 시행규칙 별표25 참고
	(7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질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제공하고 있으며,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고 있음 오물·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폐기물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 및 「식품위생법」 시행규칙 별표25 참고
	(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염병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마련(현행화)하고 있음 	
	(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염병 관련 비상연락체계 (격리시설·관할보건소·시군구 및 시도)를 구축하여 현행화하고 있음 	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	(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사자, 이용자, 입소자 등 시설별 감염 관리 책임자(방역 관리자)가 지정되어 있음 	
	(4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사자, 이용자, 입소자 등 예방수칙 및 감염 대응지침 등 교육(전파)을 실시함 	
	(5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손소독제, 마스크,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확보 및 보유 여부하고 있음 	
	(6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 내 주요 공간 주기적 청소, 소독, 환기 등 위생 관리를 하고 있음 	
	(7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 내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(대기)할 수 있는 격리 시설(공간)을 확보하고 있음 	